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9. 23.]

1. 건설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59번지 행복주택 29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시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 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 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 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주자격(요약안내)
청년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안중이 아닌 무주택자 (출생일 1984.9.24 ~ 2005.9.2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자립준비청년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생일 1959.9.23. 이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재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청약절차 및 일정 : [온라인 접수: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인터넷 청약·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후]
10월14일(월) 10:00 ~ 10월17일(목) 17:00	11월1일(금) 16:00 이후	11월11일(월) 10:00 ~ 11월15일(금) 17:00	약3개월 소요	2월14일(금) 16:00이후	2월25일(화) ~2월28일(금) 17:00까지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우편·현장)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사회보장정보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부동산 전자계약 (https://irts.molit.go.kr)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별도공지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 행복주택은 시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은 인터넷청약(https://apply.gh.or.kr)으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전자계약 마감 시간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처 :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전화:031-225-7848)] ※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최초 모집 공고일(2024.9.23.)」입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구분	건설위치	총세대수	건물층수	입주(예정)
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59번지	29호 (금회공급 29호)	지하1층~17층	'25년 3월

※ 단지 내 총 435호 중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급호수는 29호(101동 4호 및 5호 라인)임

CLTI	공급형				모집호수	<u>-</u>		세대	당 계약면적(m²)		쵟댖	LLHF
단지 구분	주택 구분	청약 구분	공급대상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최대 거주 기간 (년)	난방 방식
		44A1	청년 (자립준비청년)	3	3	0	44.9800	14.3359	31.6368	90.9527	6	
O천		44A2	청년 (지역우선 포함)	9	3	6	44.9800	14.3359	31.6368	90.9527	6	711 HH
에서에 티크시에	44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지역우선 포함)	11	5	6	44.9800	14.3359	31.6368	90.9527	6~10	개별 난방
		44C	고령자 (지역우선 포함)	6	3	3	44.9800	14.3359	31.6368	90.9527	20	

- ※ 청약시스템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공급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관리비는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별로 부과되며, 전용면적 외에도 계단, 복도,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 면적의 관리비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공급	급형	_	공급대상		대보증금(천	원)	월임대료	최	대전환시 임	내대조건				
단지구분	주택 구분	청약 구분	공급다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원)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소득 有	49,320	4,932	44,388	205,500	(+)	66,320					
		44A1	청년 (자립준비청년)	1 13	15,520	.,552	. 1,500	203/300	(-)	25,320					
			(자립순비정년)	소득 無	46,580	4,658	41,922	194,080	(+)	62,580	100,750				
				上 つ 無	40,560	4,030	41,922	134,000	(-)	23,580	261,160				
			│ (지역 <u></u> 후선 ├─	소득 有	49,320	4,932	44,388	205,500	(+)	66,320					
0천	44	44A2		— ¬ ¬	43,320	7,332	44,500	203,300	(-)	25,320	275,500				
하시티		4482		보다.	소득 無	46,580	1650	41,922	194,080	(+)	62,580	100,750			
Olokiel				<u> </u>	40,500	4,658	41,922	194,000	(-)	23,580	261,160				
	44B					11B	신혼부	.부. 가조	54,800	5,480	49,320	228,330	(+)	73,800	117,500
		(지역우선 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지역우선 포함)		(지역우선 포함)	(지역우선	220,330	(-)	27,800	307,080					
		44C	고령	<u>.</u>	52,060	5,206	46,854	216,910	(+)	70,060	111,910				
		440	(지역우선	· 포함)	32,000	3,200	40,034	210,910	(-)	26,060	292,740				

- 공급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경쟁시 순위→추첨) 및 순위 부여(경쟁시 순위→추첨)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동호배정은 전산추첨)합니다.
- 동일한 전용면적(소수점 이하 절사) 공급형(주택구분) 범위 내에서 일부 주택(청약구분)이 남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청약 구분) 예비당첨자에게 시설의 변경(세대 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유무 등)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공급(동호배정은 전산추첨 배정하며 주거약자 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합니다.
 - ※ 남는 주택의 공급대상별 공급 순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대학생→신혼부부→청년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거나 예비당첨자가 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 또는 예비당첨자 자격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 세대 내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하며, 설치되는 시설물을 확인하여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 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으로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또는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대상 여부, 할증대상 여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1개월 전까지 해약 신청하셔야 하며, 주말 및 휴일 퇴거의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해지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하며 1개월 이내 비용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 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 단지 내외부환경,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 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행사 대한토지신탁(주)]에서 제공하는 통근·통학버스 등의 주거서비스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제공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 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 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 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 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서류제출 대상자는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를 각각 3배수 이내로 선정 합니다. 다만 우선공급 대상자가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대상자 수만큼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가선정하며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우선공급에서 배점에 의한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기준으로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입주자로 먼저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 면적
- 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해당 공급형	공급가능 면적
		전용면적 44m² 주택을 공급
1인 이상	44A1, A2, B, C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m²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기준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급형으로 청약 신청 후 입주 시 해당 세대원 수 이상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1.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⑰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⑪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1984.9.24.~2005.9.23.)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1인	4,179,557원 이하	-	-	
人 大 大 丁 フ	2인	5,957,284원 이하	6,498,854원 이하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세대주인 경우 (세대기준)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 - * (**)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본인 기준)		4,179,557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④ 해당 세대(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7.8	출생	자산보유	기준금액
구분	자녀 수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1명	30,000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가구 	2명 이상	32,8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2명 이상	32,8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	, <u> </u>
그 밖의 경우	-	27,3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했으나 자격검색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며, 소명결과에 따라 수정계약을 체결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⑭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청자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주택 건설지역(이천시) 또는 연접지역(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시, 음성군) 이 거주지 이 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지역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우선공급	추첨

3-1-1. 청년 (자립준비청년)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현재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1순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천시) 거주지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자립준비청년(우선공급)	순위 →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현재, <u>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u> <u>모두 무주택자)</u>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ଡ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岎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⑮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②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단, 가구원수가 2인의 경우에는 일반 110퍼센트, 맞벌이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기구전구	일반	일반 맞벌이 부부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2인	5,957,284원 이하	7,040,426원 이하	6,498,854원 이하	_	_	-	
3인	7,198,649원 이하	8,638,37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9,358,24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10,078,10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898,161원 이하	9,073,314원 이하	10,723,007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1,547,854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530,086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1,407,592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12,285,099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1,475,940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2,432,267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13,388,595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맞벌이 945,854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이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출생	출생 자산보유 기준금액		
干正	자녀 수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1명	38,000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가구	2명 이상	4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2명 이상	4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그 밖의 경우	-	34,5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2인이 동일단지에 중복신청할 경우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주택 건설지역(이천시) 또는 연접지역(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시, 음성군) 이 거주지 이거나 소 득 근거지 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수도권[1순 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대상자(지역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 요건을 갖춘 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 제외)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우선공급	추첨

3-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지디가 따는 기기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1인	4,179,557원 이하(120%)	-	-	
2인	5,957,284원 이하(110%)	6,498,854원 이하	-	
3인	7,198,649원 이하(100%)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100%)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100%)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100%)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출생	자산보유 기준금액		
자녀 수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명	38,000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2명 이상	4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2명 이상	4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	34,5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자녀 수 1명 2명 이상	자녀 수총 자산가액1명38,000만원 이하2명 이상41,400만원 이하2명 이상41,400만원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지역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23.) 현재, 고령자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우선공급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내 용		일 정	비고
청약 접수		'24.10.14.(월) 10:00 ~ '24.10.17.(목) 17:00 '24.11.1.(금)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시뉴세월	대상자 발표	16:00 이후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		'24.11.11.(월) ~'24.11.15.(금) 10:00~17:00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현장접수처에서도 접수[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랜드코아 5층 502-1)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 ※ 서류 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 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이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 페이지 배송 조회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 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자격 조사	약3개월 소요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예비자) 발표 약방법 안내)	'25.2.14.(금) 16:00 이후	・GH주택청약센터(<u>https://apply.gh.or.kr</u>)
	계약금 입금	'25.2.27.(목) 17:00 까지 [전자계약 1일전 입금]	· 개인별 가상계좌※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의 고객서비스/계약정 보 조회에서 확인
계약 체결		105 0 05 (\$ \ 10 00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전자계약	'25.2.25.(호) 10:00 ~ '25.2.28.(금) 17:00 까지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도와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 (현장 접수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백산그랜드코아 5층 502-1) [현장 계약 가능시간: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방식의 변경시는 청약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현장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미성년자는 필요서류(계약안내 참조)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시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아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는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됩니다.
 -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게시됩니다.
-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o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ㅇ 현장 신청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 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031-225-7848)[**평일 10.00~17:00 가능**]

■ 서류제출 방법

-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o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제출) 우편번호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행복주택 공급담당자) (현장접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031-225-7848)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 o 준비서류는 아래 "6.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흘림 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o 인터넷(PC) 청약 절차



- ㅇ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u>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u>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 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o기타사항
-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낮은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I 73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9.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비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만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세대 모두작성 * 예비신혼부부 계층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작성 * 고령자 계층 : 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mark>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림 서명 불가)</mark>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1통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서식)
주민등록표초본	 *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u>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1통

	※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진단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데이르 기그인으로 이저바그지 취노 경우	1통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2순위만 해당)는 <mark>서류제출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순위</mark>		
	확인서 필수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양권초 교회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1통	
(청약저축 포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 외 신청자(고령자 계층 제외)는 입주전까지 사본 제		
	출 가능		
		1통	
각서	• 작성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각서에 <u>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u>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1통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0	
0170152	·이제 레다지마 제초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에 무지기 되되면 6구 		
「장애인고용촉진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궁중성애인 단폭 또는 궁중성애인이 있는 제대원구가 2명인 신성자가 신용면식	1통	
확인서	50m²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해당자만 제출>		
출생증명서	< 아대 애칭자인 제물> 출생 신고 전에 출생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20 L4 L4 20011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청 년 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太o	사회초년생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 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한국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립준비 청년 (우선공급 대상자)	(퇴소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붙임 서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중 한가지 서류 (퇴소 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붙임 서식)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 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입주시까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 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작성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시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해당자만 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인 경우]77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학교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신혼부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신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혼부계	예비 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mark>상세증명서</mark> 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 도 발급가능하며 혼인합산기간 확인을 위해서 제출필요)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행정복지센터
· 계 층		* 본인 우 본인관계공영사 새 세출(압구 전까지 미세출 시 영점 및 계약이 무료서리됨)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등
			J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시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6.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함)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예비신혼부부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공사 소정양식-붙임,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5.2.14.(금) 16:00이후 발표]

- o 당첨자 발표는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됩니다.
- * 발표일정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o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o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를 통해 게시됩니다.
- ㅇ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일정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입금확인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molit.go.kr)		
계약금 입금	\Rightarrow	(SMS 발송)		로그인 (휴대폰 인증)	\Rightarrow	전자계약체결 (공인인증서)		계약서 출력

-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계약을 도와드리며,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와 계약 상세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 과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계약체결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장계약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

- * 계약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u>031-225-7848</u> [가능시간 : 10:00 ~ 17:00]
- * 현장계약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 서명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관련 본인인증 강화로 현장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 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전자계약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하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 동의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 동 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 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 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기	자 동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 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 산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예수금: 예수금 잔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조합원입주권: 다음각 목의구분에 따른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에 따라정해진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때에 그건물과이에 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조사일현재까지 납부한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	ᇹ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사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_ 20 _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정)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l .	.t		1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_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B 8 41 L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807 715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대학생 계층 (자립준비청년 포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계층 20년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			
	 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 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임대주택 단지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차량이 아닌 ①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②임차인 등의 전용차량(임차인 등이 전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한정함) 이며, 이외 차량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학생이 소유하거나 전용하는 차량은 고가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등록이 불가합니다. * 고가차량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공고일 기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 대상자별 일반 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 포국기군 포피 미필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거주 중「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바목에 따른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 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 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갱신계약시 자산·자동차가액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시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외부줄눈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 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 층별, 호수별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를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

- 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m²) X 0.3025)
-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외부줄눈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 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천정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의 수전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는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난방이 되지않고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환기가 부족한 경우, 약간의 습기에 의해서도 결로 및 곰팡이가 쉽게 발생되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각종 집기류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라 옥상출입문(계단실)은 평상시 잠김상태이며, 화재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평상시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단지연면적(추가)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환경

- · 인접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입주 후에 시행될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지 남서측에 사동초등학교 및 북동측에 사동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임차계약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임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지 주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조성공사는 시공사의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지장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확인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지 북측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주기장이 위치하며, 입주 후 차량이동에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남서측에 경충대로(약 15m 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이로인한 차량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에 영동고속도로 방음벽(높이 18m)으로 인하여 저층 일부세대에 조망간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지 주변 냄새, 병충해, 미관에 관한 내용 또는 유지관리 사항들은 관할 지자체에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환경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식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및 D/A, 쓰레기집적소 등으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동 지하 1층 주동 출입구 부분 제연덕트 등에 의하여 동선 간섭 및 휀 작동에 따른 소음 및 불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조경용 조명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는 인접한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시선간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과 주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이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

니다.

-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별 이동동선 거리가 다를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저층부(1~5층)는 식재로 인한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옥외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 턱, 출차경고장치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시야간섭등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갑 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설치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각 동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무인택배설비는 각동마다 지하1층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 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 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 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방지를 위해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노출될 수 있고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저층세대에 직접 면하지 않게 계획되어있으나, 일부 세대와 인접한 보관소는 저층세대에서 조망권간섭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필히 계약 전 인허가 도서 등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에 지하주차장 이용시 일부 동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 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 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 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부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옥외계단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수취함은 우편물 수취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지 중앙광장 대지 레벨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단지 대지레벨에 의해 우편물 수취함 위치가 상이하며, 또한 각 동별 우편물 수취함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하니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옥상 101동에 TV 공청,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지하주차장 및 동별 아파트옥상(102동, 105동 설치 예정)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아파트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 울타리는 설계, 이천시청의 협의에 따라 미설치 또는 식생울타리 또는 일부난간대 설치 등 변경요 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옥상 102동 103동 104동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관

- · 주동 옥탑,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외부의 색채계획, 옥외시설물, 문주, 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미술장식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없이 출연금으로 대체 예정입니다.
-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옥탑구조물,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특이사항

· 101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상가에서 발생하는 냄새, 소음, 진동, 배기구 돌출구조물, 냉각탑 설치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1동 지하주차장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16대)이 계획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동 출입구까지 이동동 선이 길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필로티 인근세대는 외기의 영향으로 내측세대 대비 난방 및 냉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2동 지하주차장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 기계실이 근접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층 부분에 지상 배기 돌출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모형 등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3동과 104동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4동 전면부에 어린이 놀이터2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5동과 106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세대에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이격하기 위한 배치로 동과 동사이에 광장,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중앙광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각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각 세대간 바라보는 구조로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옥상층 출입시 사다리 및 점검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여 이동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며, 일반 주차구역에서 동 출입구까지 이동동선이 길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 각 세대의 기본 천장고는 2.3m로 시공됩니다.(허용오차 2% 내외)
-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 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 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환기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 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상·하부장 배면에는 배관배선을 위한 주방가구 일부 타공으로 마감재 미설치부위가 노출됩니다.
- · 가스쿡탑 기본설치로, 인덕션 임의 사용시 전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상부에는 주방 TV용 점검구가 있으며, 점검구 개방시 마감재 미설치 부분과 배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 및 냉매 매립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응축수 배관 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실외기실 천정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일부 발코니/실외기실에 대하여서는 각종 배관 및 전열교환 기 등이 노출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노출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44A1, A2, B. C타입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현관 벽면에 매입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화장실(시스템욕실)의 바닥 / 벽체등의 충격음 울림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시 설치 된 세대 화장실의 양변기 / 세면기의 위치는 설치면 보강이 되어있고, 임의로 위치를 이동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보강되지 않은 면의 기타 시설물 설치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욕조, 샤워부스부위 제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대피공간, 실외기실)
-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스탠드형, 각방 벽걸이형 냉매배관이 기본제공 됩니다.
- · 타입별 상이하게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위치에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전열교환 필터는 소모품으로써,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 시간에 따라 교체 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본 제공 수량(초기 전열교환기 내부설치分) 外 필터는 소모품으로 입주자의 비용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실외기 등의 설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대피공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랫집으로 피난할수 있는 설비로 화재시 하향식 피난구 상부도어를 여는 순간 직하 아래 세대에는 홈넷(월패드)와 연동하여 경보가 발생하며 경비실 및 방재실에도 경보음이 발생한다. 하향식 피난구 상부도어를 열고 하부도어를 개폐하여 사다리를 펼쳐서 직하세대로 피난하며 아래세대에서는 하부도어는 개폐할수 없는 구조이다.
 - (*하향식 피난구 제외세대 : 1층 세대 전체, 아래층이 피로티인 세대(2동 306호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됨)
- · 44A1, A2, B, C타입 5층이상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안되며 발코니에 있는 비상탈출벽체를 통해 옆 집으로 피난할수 있다.
- · 세대 내 설치된 주방식탁 등의 위치는 공간계획상 설치된 것이며 입주민의 개인 식탁배치에 의한 식탁 등 위치이동이 불가합니다.
- · 조명(거실), 가스, 난방, 환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어가 가능합니다.(추후 주민입주자회의 결정에 따라 유상으로 진행 가능, 임대시 무상 지원 없음)
- · 1~2층, 최상층의 경우는 세대 내 아파트 발코니 및 거실, 발코니 확장된 방 등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 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인조대리석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실별 치수에는 천장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 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출입키는 세대 당 4개가 지급 됩니다.
- ㆍ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조석 등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이사시 단지내 조경 및 시설물 등의 배치에 의해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능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 이천의 학교 설립 주체는 유치원·초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이천시교육청이며, 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 · 초등학생은 이천사동초등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며, 중학생은 효양중학교, 사동중학교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아울러,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학생 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 요인 발생 시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키즈카페, 맘스카페, 멀티룸, 맘스스테이션 등

1. 공통사항

-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변의 환경 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인이 운영 및 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실외기 설치 구획이 확보되어 있어, 추후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일부 실외기/배기팬/ 탈취기가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인근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101동측 지하주차장에 별도로 구획되어 입주자 임의로 소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으며, 입주자용 주차장은 지하1층 별도의 주차차단기를 통해 진입 가능합니다.

2. 커뮤니티 시설

- · 커뮤니티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커뮤니티시설의 내외부 마감 및 디자인은 CG 및 인허가도서 확인 후 임대차 계약을 바라며,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및 지하 계획

-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7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충전공간이 총 3대(급속1개소, 완속2개소) 계획되어있으며, 주차장 중앙 2번램프 주위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상 불편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상~지하1층(지하1층의 경우 소형택배차량에 한함) 주차장으로 진입 및 이동 가능합니다.
- · 주차장은 공동사용으로 동별 주차대수는 일부 불균등 하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차 가능대수는 총 566대(근린생활시설 16대 별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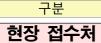
■ 방음벽 관련 사항

- · 당해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거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와 인접한 국도 및 고속도로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방음벽은 아파트 부대시설로 입주자 관리대상입니다.

10.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현황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업체	감리업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 ㈜KR산업	-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 ㈜수양엔지니어링 - ㈜더베스트이엔씨

11. 위치안내



. 운영: 10:00~17:00

[현일 및 점심/전체]

. 상담전화: 031)225-7848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 주의: 자격심사서류 우편제출자는 아 래주소로 발송

우편번호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행복 주택 공급담당자)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 031-225-7848

2024. 9.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 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 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추거급여 계좌청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추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줍잠 실택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룦 결제(<u>카</u> 드),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능),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정자으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재 6개월, 「입주대상재 5년, 「계약자」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성 명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인	주 소						
		무주택세디	내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혹	^밖 인 내용		
	구분	해당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ф П		원	[수분양자]		
기타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자산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70017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예 🗆		원	[출자자]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부채	<u> </u>	아니오 🗆		원	[임대인]		
- /	장기카드 대출	예 🗆		원	[차주]		
	(카드론)	아니오 🗆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가.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나. 분양권: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다.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마.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거짓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신청인)	주소	(TEEX HMCI)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은 <u>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u> (예비)입 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u>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u> 우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주택유형(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 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①<u>입주자모집 공고일</u>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u>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u>으로 처리됨

2024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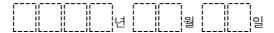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제공을 동의함 ¹⁾ 통보하지 않는 것에 (서명 또는 인)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 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상기 신청인 (1), (2)는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상기 신청인 (1), (2)는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상기 신청인 (1), (2)는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 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인)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 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배우자		-		
		-		
		-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인)

동 의 서

계 약 대 상 : []행복주택 동 호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감날인)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접수 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각1부.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u>행복주택</u>(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첨 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필요)

- ㅇ 성 명 :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인)

각 서

계 약 대 상 : [경기행복주택 동 호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등
 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서명)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현장신청용)

1. 신 청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내용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비고
			□ 우선공급 □ 일반공급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자격)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 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 붙임: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계약용)

1. 계 약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계약주택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동 호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서명)

※ 붙임: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성명		생년월	일			
대상 아동	퇴소 연월일						
	시설명	인가번호					
대상 시설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상기 대성	}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	복지시설	실에서	퇴소한	자임을	_: 확인합니	니다.
					년	월	일
		00	0 -	원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 각서

본인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로서 경기행복주택에 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령 취지를 감안 해당 주택의 입주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보호 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입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명:

생년월일 :

신청인: (인)